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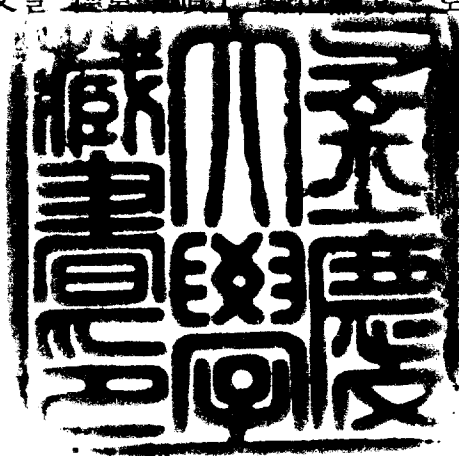
704
3-94
101
=2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宗教法人의 租稅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鎮 晃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2月

釜慶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稅務管理學專攻)

吳 正 宇

吳正宇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12月 22日

主 審 經營學博士 朴 泳 炳



委 員 經營學博士 金 泰 容



委 員 經營學博士 金 鎭 晃



< 목 차 >

Abstract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1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 2장 비영리법인의 유형과 현황	5
제 1절 비영리법인의 유형	5
1. 비영리법인	5
2. 비영리법인의 유형	13
제 2절 비영리법인의 현황	18
1. 비영리법인의 규모	18
2. 비영리법인의 과세	19
제 3절 종교법인의 현황	21
1. 종교의 개념과 종교법인	21
2.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현황	23
제 3장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26
제 1절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26
1. 법인세법	26
2. 상속세·증여세법	35
3. 부가가치세법	41
4. 재산관련 세법	45
5. 주요국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50
제 2절 종교법인의 비과세·감면제도	53
1.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의의	53
2. 비과세·감면제도의 필요성	54

3. 우리나라 비과세 · 감면제도	55
제 3절 종교법인 조세제도의 주요사항	59
1. 종교법인의 영리활동	59
2.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59
제 4장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62
제 1절 대상선정과 설문내용	62
1. 대상선정	62
2. 설문내용	62
제 2절 설문분석	64
1. 종교법인의 일반현황	64
2. 종교법인의 수익사업	66
3.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68
4. 기타	76
제 3절 종교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1. 조세 및 회계 실무교육	83
2. 조세법의 간이성	84
3. 이자 · 배당소득	85
4. 기부금	86
5. 특별부가세 폐지(안)의 부당성	87
6. 주식보유 제한	88
7. 재산관련 세제	89
8. 종교재산기본법(안)	90
9. 재무보고기준 및 외부감사제도	91
제 5장 결 론	93
 참 고 문 헌	97
(부록 1)	100
(부록 2)	104

< 표 목 차 >

<표 2- 1> 우리나라 법인종류별 법인 수	8
<표 2- 2> 연도별 법인 수 현황	18
<표 2- 3> 고유사업별 공익법인 현황	19
<표 2- 4>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	20
<표 2- 5> 공익법인의 수입금액 현황	20
<표 2- 6> 종교유형별 종교인구 현황	23
<표 2- 7> 종교별 법인현황	24
<표 2- 8> 종교법인 운영 학교현황	24
<표 2- 9> 종교연구소 현황	25
<표 2-10> 종교법인 운영 의료기관 현황	25
<표 2-11> 종교법인 운영 사회복지사업 현황	25
<표 3- 1>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26
<표 3- 2> 법인유형별 법인세율	28
<표 3-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29
<표 3- 4> 비영리법인의 손금한도	31
<표 3- 5> 수익사업의 범위	33
<표 3- 6> 상속·증여세 세율	36
<표 3- 7> 공익법인의 범위	37
<표 3- 8> 부가가치세 면세	43
<표 3- 9> 법인유형별 특별부가세 신고내역	45
<표 3-10> 양도소득특별신고 세율	47
<표 3-11>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48
<표 3-12> 주요국 종교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51
<표 3-13> 주요국 종교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52
<표 3-14> 국세·지방세 비율	56

<표 4- 1> 종교별 설문지 회수현황	63
<표 4- 2> 종교법인의 평균 신도 수	64
<표 4- 3> 조세 및 회계실무교육 이수 현황	65
<표 4- 4> 주 재원조달 방법	65
<표 4- 5> 연간 수입	66
<표 4- 6> 수익사업 중 주된 수입원	67
<표 4- 7> 총수입에 대한 수익사업분	67
<표 4- 8> 수익사업 수입의 목적사업 사용도	68
<표 4- 9> 조세법 이해도	69
<표 4-10> 실무상 조세법	70
<표 4-11>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70
<표 4-1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71
<표 4-13> 기부금의 손금한도 제한	72
<표 4-14> 배당소득에 대한 준비금 설정	73
<표 4-15> 특별부가세 면제 한시적 적용	73
<표 4-16> 출연재산 주식 5%이상 보유금지 조항	74
<표 4-17> 개발제한구역 내 종합토지세 및 기타 세제 부과	75
<표 4-18> 부동산 취득시 비과세 유예기간	76
<표 4-19> 감면 및 비과세 처리 시 세무공무원들의 반응	76
<표 4-20> 종교법인의 지도·감독업무 위임에 따른 각 시·도의 지도·감독 사항	77
<표 4-21> 한국종교재산기본법 제정인지도	78
<표 4-22> 한국종교재산기본법 필요성	79
<표 4-2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 대상	80
<표 4-24> 재무보고기준제정,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	80

A Study on Improvement of Religious Corporation Tax System

Oh, Jeong-Woo

*Major in Tax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 Korean economy scale has been increased, and our society has been various, the government cannot afford to fill the all desires of social members.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the parts for civil non-profit public interest business has been raised due to the growth of unemployment rate and the unbalanced finance with the recent crisis of foreign exchange.

The government cannot help committing to the civil organization the parts of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 promotion that could be done by nation or public organization due to the lack of resource and the limitation of budget. Non-profit corpo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such as welfare, culture, education, medical care, religion, public campaigns, and so on.

Therefore, with general comprehension of non-profit corporati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result of question inquiry from the accountants who are working at religious corporation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Moreover, this study will show that the religious corporation tax system is reasonable in reality or essence, and the possibility of rational tax system reformation in aspect of tax legislation. Fin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thod on practical tax operation for religious corporations.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발전의 원동력인 경제는 모든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었지만, 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분야의 발전에 치우쳐 경제적인 면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경제 이외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인력의 증가, 재정수지의 적자현상으로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면서, 단체의 설립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공익증진에 있는 비영리공익사업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그 비중 또한 커지고 동시에 복잡해졌다.¹⁾

비영리 조직 또는 민간 자발적 부문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자선단체나 지역 공동체 조직에서 출발하여 민간사회서비스기관, 병원 및 의료기관, 대학, 재단, 기구, 단체 등 많은 분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각 사회보다 서로 다른 시기에 상이한 특성과 형태로 나타났고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여 왔으며, '보이지 않는 부문'인 비영리조직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형식은 민간에 의해 서지만 목적 상으로는 공적인 조직들인 비영리조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정부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한계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해야 할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일부분을 민간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으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국가가

1) 손원익, 비영리법인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동서연구, 8권 1호, 1996, p. 1.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 문화, 교육, 의료, 종교, 사회운동 등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정책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민간분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지원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일부 비영리단체 및 법인의 형태를 규제하기 위하여 세제가 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위축되는 운용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지원제도는 비영리영역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전반에 관한 이해와 함께 각 개별 세법마다 비영리법인을 별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영리법인 중 종교법인을 중심으로 조세제도와 조세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합리적인 종교법인의 조세제도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조세실무처리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중 종교법인이라는 특정법인의 한정된 영역에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개별 세법상 조세정책 및 세제지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각종 도서,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정책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분석 정리하는 문헌조사연구방법으로 비영리법인과 특히, 종교법인 현황을 파악하며 종교법인의 특성상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등 논지를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종교법인의 조세와 관련 세무처리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여러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일반현황 및 조세법 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종교법인에 대한 기존과세제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연구·검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계획에 따라 본 연구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다루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제시하고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2 장 비영리법인의 유형과 현황에서는, 비영리법인의 특수성 이해를 위하여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유형 및 현황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본 논문의 중점인 종교법인에 대하여 종교의 개념과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 3 장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재산관련세법 등 여러 세목에 규정된 일반적인 현 조세정책의 세제지원 내용과, 우리나라의 국세 및 1995년 지방단체장 선거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및 감면 논의를 조사하였다.

제 4 장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종교법인의 세무 및 회계실무자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연구하며 보다 합리적인 종교법인의 조세제도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검토 및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제 2장 비영리법인의 유형과 현황

제 1절 비영리법인의 유형

1. 비영리법인

비영리는 'nonbusiness', 'not-for-profit', 'public sect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nonprofit'로 쓰이고 있으며, 영리조직은 보통회사 형태를 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를 '기업'이라고 부른다.

조직을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의식적인 이윤추구동기의 존재여부 및 개별적인 조직 지분권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AAA)에서 발표한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²⁾

첫째,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윤 추구동기가 없다.

둘째,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셋째,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에 의한 양도, 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자원의 제공자나 기증자로부터 제공한 자원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비례적인 재무적 효익이 요구되지 않는다.

비영리조직에는 대학, 종교단체, 병원, 자발적 후생복지기관, 자선단체, 정부 등이 포함되나 조직의 구성원이나 회원 또는 출연자가 재무상의 효익을 받거나 요구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골프 또는 컨트리클럽, 무역협회, 노동조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윤동기나 지분권을 갖지 않은 자원제공자의

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Report of Committee on Accounting Practice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 The Accounting Review, p. 94-95.

기증에 의해 사회에 유익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이다.

또한, 미국 재무회계기준 심의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FASB)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중요한 특성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³⁾

첫째, 제공한 자원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익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자원 제공자로부터 자원을 받는다. - 무상양도성

둘째, 운영목적이 어떤 이익이나 이익에 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 비영리성

셋째, 매각, 이전, 상환이 가능하거나 또는 청산 시에 잔여재산 분배권을 부여하는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회환원성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은 의도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자원제공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고유목적 달성에 이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각, 이전, 양도, 교환 등이 가능한 개인적인 지분권이 있을 수 없고, 또 청산 시에도 잔여재산은 구성원이거나 자원제공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귀속되는 조직이므로 공공성과 사회성에 기초하여 영리기업이 창출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하여 사회와 경제의 발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경제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영리사업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연구와 학술활동의 영위 내지 지원 그리고 종교, 자선사업, 환경 및 인권보호, 문화와 예술사업 등 일반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 사업을 영위

3) FASB, SFAC No.4, op. cit, p. 6.

하는 모든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영리법인과는 존재목적에서부터 대칭 되는 개념이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경영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사업 또는 목적에 지출하게 되면 조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각종 특례규정은 배제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게 된다.

1.1. 비영리법인의 요건

1.1.1. 비영리성

비영리법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윤동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영리목적의 배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자와 그 구성원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재산을 이전 또는 귀속시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면 비영리법인의 자산은 여타 동종의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이전하거나 혹은 청산과정을 통하여서라도 비영리법인의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판정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에 대해 구성원이 지분을 갖고, 잉여금이 종국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다면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1.1.2. 법인성

비영리법인은 사법인으로 법인성을 지녀야한다. 국가권력을 갖지 않고 설립된 사법인으로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법인은 아니지만 조세법 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있다.

즉,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첫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둘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94년 12월 22일 세법 개정 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2-1> 우리나라 법인종류별 법인 수

(단위 : 개)

구 분	계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1996년	160,071	135,709	4,797	939	5,806	11,959	861
1997년	179,316	153,602	5,030	963	6,242	12,575	904
1998년	181,835	155,462	4,956	996	6,656	12,817	948
1999년	206,354	179,019	5,114	1,025	6,893	13,295	1,008

주 : 1.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이 있는 사단, 재단 등과 조합법인이 포함됨.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0.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도 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등록된 법인종류별 법인 수는 총 206,354개이고 전년에 비하여 24,519개가 증가되었고 1999년 말 현재 비영리법인은 13,295개로 전체법인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1.3. 사단(재단)성

비영리법인은 사단성 또는 재단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은 법인격만 없다 뿐이지 사단과 재단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며, 권리능력을 취득할 때까지 법인격 있는 사단과 재단의 모든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인적결합의 여러 가지 형태 중 사단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재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다수인의 집합체로, 그 자체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독립 단일체이며, 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단이며, 권리의 주체로서의 단위 또는 권리의 객체로서의 단위가 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때에는 비영리가 되며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사단성 또는 재단성을 가져야 한다.

1.2. 비영리법인의 구분

법인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은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인 영리사단법인과 학술, 종교, 자산, 사교,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결합한 사람의 집단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재단법인이 이에 속한다.

1.2.1.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유형은 학술·종교·자선·사교·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비영리법인

은 민영에 의해 지배되거나 민영으로 경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보통 사단법인이라 함은 비영리사단법인만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사교·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특정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특히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으며,⁴⁾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한정된 사람·장소·사항에 관하여서 적용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국민의 지적수준향상과 국가사회의 개발자원의 발굴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육아보호법, 윤락행위방지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보건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기관운영, 정신질환자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보호증진을 위해 의료업무를 수행할 의무와 목적을 가진 의료법인이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익법인 등 많은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2.3.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에서의 비영리내국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공공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하던 규정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에 의하여 삭제됨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함은 첫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둘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셋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하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영리성 유·무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판례⁵⁾는 우리나라의 영업활동에 대한 영리성 존재 유무에 따라 영리외국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판단기준을 삼고 있다.

1.2.4.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상 아래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등 국가와 사회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는 법인세율을 일반법인과 동등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법인이라는 개념대신 조합법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수익사업 관련)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해당되는 조합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

5) 대법원, 1986.10.14.선고 84누 430 판결, 동 1989.6.27.선고 88누 1820, 판결 참조.

조합 등이 있다.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법인세와는 달리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는 단체를 공익사업에 한정하는 점에서 법인세법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공익법인의 범위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예술·문화사업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6.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무상으로 해당 단체나 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과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으며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체·법인이 있다.

1.2.7. 지방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비과세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되, 학교를 경영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

이들 비영리사업자가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비해 그 범위가 좁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비영리사업자가 반드시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영리법인의 유형

2.1.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지식수준 향상과 국가사회의 개발자원의 발굴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법인 자체에 대한 조세부과제도는 근본적으로 비과세제도가 원칙적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1조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도 학교법인의 공익성 사업경영의 이유에서 과세 면제 및 용도구분에 의한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은행예금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각종 주식 소유로부터 얻는 배당금 및 기타의 모든 수입금은 학교법인의 이사들에게 배당금으로 분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설립운영중인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등을 그 학교법인으로부터 국가에 헌납하거나 다시 국가에서 타 학교법인 등에 국가보조금으로 이전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육자원으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학교법인설립의 근본목적과 취지에 합당하며 일본,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비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⁶⁾

학교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입 중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외의 소득과 법인자체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일체의 조세는 비과세 된다.

2.2.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윤락행위등방지법·정신보건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법·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도·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그 연합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필요한 상담·치료·직업훈련 등 일체의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복지사업수행에 관심 있는 사회단체와 개인으로부터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거나, 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⁷⁾ 하지만,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 4. 30.)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은 그 사업목적이 공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6) 최삼철, “비영리법인과 조세제도”, 1996, 부산대학교출판부, p. 10.

7)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공익사업을 대신 행하는 공익법인이고 또한 비영리 목적사업경영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이므로 일체의 조세부과는 당연히 면제·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법인자체가 얻는 수입금이나 수익사업 내에서의 전입되는 소득금액을 복지사업 목적과는 상이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법상 조세부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3.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관·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改正 94. 1. 7, 97. 2. 13, 法5454, 2000. 1. 12)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영리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료업무를 수행할 의무와 비영리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설립자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해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 자체도 영리목적으로 의료사업을 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건강확보와 의료사업수행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대한 조세는 당연히 면세·비과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수익을 일반의료사업에 다시 재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병원, 학교법인병원, 공공의료법인병원⁸⁾과는 다르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무상진료 및 자선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으로 규

8)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9)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p. 118.

정된 일반의료행위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¹⁰⁾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의무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어 이윤의 분배가 불허되고 또 청산 시 모든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의무조항이 부여되는 이유는 의료사업의 공익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산업인 의료업은 타 산업과 달리 특성상 대체나 보완이 불가능하다. 병원 경영의 악화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제는 조세제도 면에서 개선 안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병원은 비영리 법인임에도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의료수익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법인이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법인·개인사업자가 사립학교, 국립대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준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에 비하여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손금산입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¹¹⁾

2000년 세법개정에 따르면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또는 의료기기 투자'를 허용하는 일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¹²⁾ (2000. 12. 29. 개정)

미국이나 일본의 의료법인은 비영리·영리의 선택이 허용되며 영리법인의

10) 통칙 19-19-20 <의료법인 무료진료비 손금산입>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원개설 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1) 삼성의료원 전장식, 경향신문, 2000. 9. 23.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2항.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 확실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일본에서의 영리병원인 의료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분배를 하지 못하고 청산 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이다.¹³⁾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허가된 기관으로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후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보건증진과 의료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 공익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세제에 대하여서 경감 내지 감면을 하든지,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여 차별적인 조세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4. 종교법인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교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종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하며,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일정한 기증재산을 근거로 하여 많은 종교시설 및 종교기관을 설치하고 종교활동은 물론, 기타 교육활동, 봉사활동, 자선활동 등의 공익사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단체로 분류되어 조세부과에서는 제외되고 있지만, 종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법적 보호장치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1951년 4월에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여 종교법인의 재산소유권과 그 재산의 유지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였으며, 종교법인이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신앙표현의 자유·사고전달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의식행사의 자유·종교시설설치의 자유·집단적 종교생활의 자유·신앙의 자유 등을 누릴 수가 있도록 규정 되어있다.¹⁴⁾

13) 손원익, 전게서, p. 119.

14) 최삼철, 전게서, p. 17.

제 2절 비영리법인의 현황

1. 비영리법인의 규모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규모와 연도별 추이는 <표 2-2>와 같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수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9년 말 기준 법인 수 총계는 206,354개이며 전년대비 13.5%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영리법인이 93.6%로 193,05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6.4%로 13,295개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과 비교하여 총 법인 중 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1991~1999년 기간 중 증가율이 영리법인의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총 법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영리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 연도별 법인 수 현황

(단위: 개)

구 분	1991	1993	1995	1997	1998	1999
영리법인	80,837	101,933	130,597	166,741	196,018	193,059
비영리법인	9,716	10,329	11,487	12,575	12,817	13,295
총 계	90,553	112,136	142,084	179,316	181,835	206,354
영리법인/총계	89.3	90.9	91.9	93.0	92.9	93.6
비영리법인/총계	10.7	9.1	8.1	7.0	7.1	6.4

- 주 : 1.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이 있는 사단, 재단 등과 공공법인이 포함됨.
 2.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외국법인을 포함함.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공익법인의 수는, 1998년 말 현재 5,221개

이며 25%에 해당하는 1,309개 법인은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이고, 75%에 해당하는 3,912개 법인이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다.

<표 2-3> 고유사업별 공익법인 현황

(단위 : 개)

연도 별	계	출연재산 없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있는 공익법인						
			소계	학교	학술·장 학·자선	사회 복지	의료	종교	기타
1993	3,995	941	3,054	1,077	849	656	146	197	129
1994	4,230	983	3,247	1,058	953	703	176	187	170
1995	4,461	990	3,471	1,055	1,046	768	197	205	200
1996	4,624	938	3,686	1,079	1,114	808	237	215	233
1997	5,269	1,357	3,912	1,101	1,157	907	261	195	291
1998	5,221	1,309	3,912	1,081	1,204	872	276	189	290
1999	5,486	1,455	4,031	1,096	1,200	906	264	220	345

주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또한, 1999년 말 현재 5,486개이며 이 중 26.5%에 해당하는 1,455개 법인은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이고,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의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단 27.2%, 학술장학재단 등 29.8%, 사회복지재단 22.5%, 의료재단 6.5%, 종교재단 5.5%, 기타 8.5%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8년 대비, 공익법인은 265개가 증가되었다.

2. 비영리법인의 과세

비영리법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표 2-4>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총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경우, 21.7%에서 1999년에는 19.0%로 감소하였다.

<표 2-4>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991	1993	1995	1997	1999
영리법인	29,615	44,262	59,523	54,972	62,293
비영리법인	6,430	10,886	16,506	16,036	14,643
총법인세액	36,045	55,128	76,029	71,008	76,935
영리법인/총법인세액	82.2	80.3	78.3	77.4	81.0
비영리법인/총법인세액	17.8	19.7	21.7	22.6	19.0

주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5>은 공익법인의 금융, 부동산, 수익사업 등으로 구분한 수입금액을 보여준다. 1998년도의 경우 9조2,083억원 중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5조 8,795억원으로 63.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금융소득이 전체 수입액의 9.5%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수입은 전체수입액의 1.2%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2-5> 공익법인의 수입금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997		1998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융	6,478	7.6	8,725	9.5
부동산	1,671	2.0	1,099	1.2
수익사업	54,203	63.9	58,795	63.9
기 타	22,498	26.5	23,464	25.5
총수입금액	84,850	100	92,083	100

주 : 국세청내부자료.

제 3절 종교법인의 현황

1. 종교의 개념과 종교법인

1.1. 종교의 개념

종교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다루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란 뜻으로, 궁극적 관심이란 곧 모든 종교는 구원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현세적 기복신앙에서부터 내세적인 불멸 내지 부활이라는 영생에의 신앙 및 인간존재의 완성에 대한 신앙 등이 있으며,¹⁵⁾ 서양의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종교(religion)라는 의미의 라틴어 “religio”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하여 ‘다시(반복하여)읽는다 라는 뜻의 re-legere’와 ‘다시 묶는다 라는 뜻의 re-ligare’, ‘다시 선출한다 라는 뜻의 re-eligere’에서 나온 말로 신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죄로 끊어진 관계를 재결합 시켜 주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한자문화권에서 서양말 영어의 religion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종교라는 개념은 본래는 불경에 나오는 개념으로 부처님의 가장 훌륭하고 높으신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그 용어를 일본이 개항하면서 서양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 ‘religion’ 이라는 용어의 번역어(근본이 되는 가르침)로 채용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한자문화권에는 종교라는 개념 이외에 도(道), 법(法), 예(禮), 경(敬), 귀(歸), 학(學), 술(術) 등의 개념도 종교적인 내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1.2 종교법인

종교법인은 종교활동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조세부

15) 김철기,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6) 박일영, 종교라는 것-종교문화와 종교심,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법인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종교법인 자체는 설립되어 있지 않고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교법인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양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재단법인과 같이 일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단법인과 같이 일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수인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종교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의 업무집행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특수법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속성(세간성)과 종교성 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종교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신자들의 교화, 선교 및 기타 사회사업 교육·박애·의료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법인의 종교활동으로는 첫째, 종교의 교양선포. 둘째, 의식행사의 집행. 셋째, 신자의 교화육성. 넷째, 예배시설의 설치 등의 고유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¹⁷⁾ 이 고유목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일반 신자의 헌금, 기부금 등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원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제공한 자원에 대하여 경제적 효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법인이나 단체는 종교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닌 조직으로서 활동한다.

종교법인의 특징으로는 첫째, 종교활동을 위한 교화, 선교,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이윤동기가 없으며 종교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 셋째, 종교법인은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의 매매, 교환, 상속, 배당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종교법인의 자원조달은 교인들의 헌금, 기부금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원제공자나 기증자는 제공한 자원에 대해 어떤 경제적 효익을 요구하지 않는다.¹⁸⁾

17) 최삼철, 전거서, p. 13.

18) 서점순,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1996,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1.

2.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현황

2.1. 종교유형별 종교인구 현황

우리나라 총인구 중 종교인구 분포현황을 <표 2-6>통하여 살펴보면, 1995년 총인구 대비 종교인구가 50.7%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6> 종교유형별 종교인구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총인구	종교인구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종교없음
1985	40,420	17,203	8,060	6,489	1,865	483	92	27	11	175	23,216
	100%	42.6%	19%	16.1%	4.6%	1.2%	0.2%	0.1%	0.0%	0.4%	57.4%
1995	44,554	22,598	10,321	8,760	2,951	211	87	28	8	232	21,593
	100%	50.7%	23.2%	19.7%	6.6%	0.5%	0.2%	0.1%	0.0%	0.5%	49.3%

주 :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0.

2.2. 종교별 법인현황

우리나라 종교법인을 종교별·법인분류별로 <표 2-7>살펴보면, 2000년 9월 현재 종교법인은 총 386개로서 개신교는 184개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며 이 중 재단법인은 104개, 사단법인은 80개이다. 불교는 84개로 21.7%를 차지하며 이 중 재단법인은 36개, 사단법인은 48개이다. 천주교는 73개로 19%를 차지하며 이 중 재단법인은 64개, 사단법인은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유교는 21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그 밖의 종교는 24개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종교별 법인현황

(단위: 개, %)

구 분	재 단 법 인		사 단 법 인		계	
	법인 수	구성비	법인 수	구성비	법인 수	구성비
불 교	36	15.3	48	31.8	84	21.7
개신교	104	44.3	80	53.0	184	47.7
천주교	64	27.2	9	6.0	73	19.0
유 교	17	7.2	4	2.6	21	5.4
그 밖의 종교	14	6.0	10	6.6	24	6.2
계	235	100	151	100	386	100

주 : 1. 기준일 2000. 9.

2. <http://www.mct.go.kr/cgi-bin/nph-hwp2tml/tonggye-data2/jongmu3.hwp>.

2.3. 종교법인 운영 비영리사업기관

우리나라 종교법인은 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교육·박애·의료활동 등의 공익사업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종교별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기관인 학교, 종교연구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8> 종교법인 운영 학교현황

(단위 : 개)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밖의 종교	계
일반대학 및 신학대학	3	38	10	2	1	54
대학원대학교	-	11	-	1	-	12
신학교	-	5	-	-	-	5
전문대학	-	12	1	1	1	15
계	3	66	11	4	2	86

주 : 1. 기준일 2000. 7. 30.
2.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0.

<표 2-9> 종교연구소 현황

(단위 : 개)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계
44	28	25	10	107

주 : 1. 기준일 2000. 7. 30.
2.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0.

<표 2-10> 종교법인 운영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밖의 종교	계
8	13	34	17	2	74

주 : 1. 기준일 2000.7. 30.
2.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0.

<표 2-11> 종교법인 운영 사회복지사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계
사단법인	4	4	-	-	8
재단법인	2	2	2	-	6
사회복지법인	11	16	27	1	55
계	17	22	29	1	69

주 : 1. 기준일 2000.7. 30.
2.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0.

제 3장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제 1절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종교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일반적으로 비영리공익사업 수행에 있고 또한, 그 사업자체가 비영리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면제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적이다.

1. 법인세법

종교법인은 공익과 비영리목적에 위한 사업수행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 하는 것이 그 본질적 측면에서 타당한 원칙이며,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법규에서도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표 3-1>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법인의 종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교·학교·사회복지법인)	○ (×)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 과 세		

주 : 1.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다.

2. 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1.1 수익사업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이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조직체를 의미한다.¹⁹⁾ 기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은 영리성이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기업의 영리활동은 '계속적이어야 하며 자본과 노동이 결합된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교법인은 법인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목적사업체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체는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수익목적사업체는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법인과 자선단체 및 종교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 법인과는 구별되며, 엄격히 말해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기업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²⁰⁾ 종교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²¹⁾

1.1.1. 법인세율

19)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20) 통칙 3-0-2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11.1.개정)

21) 법인세법 제24조, 동 시행령 36조, 소득세법 제34조, 동 시행령 제80조.

우리나라 법인의 각 유형별 법인세율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소득 및 수입에만 과세되며²²⁾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연간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2%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표 3-2> 법인유형별 법인세율

법 인 형 태	과 세 대 상	법 인 세 율
일반 영리법인	모든 사업소득	과세표준 1억이하분 : 16% 과세표준 1억초과분 : 28%
일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수익사업소득(수입)	과세표준 1억이하분 : 16% 과세표준 1억초과분 : 28%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12%

주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하지만, 공공법인 중에서 <표 3-3>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과 그 외 공공법인의 과세 상 차이점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5년 이내에 생긴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계산 시 차감할 수 없는 불리함이 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 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공공법인과 같이 과세 받을 수 있다.²³⁾

22) 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2001.11.1.개정)

23) 통칙 4-1-5 <공공법인의 신고> 조세감면규제법 제 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당기순이익 과세 포기법인을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97.4.1. 개정)

<표 3-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세특례제한법 72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예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공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12조의 제2호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 46012-1619, 1996. 6. 4.)

1.1.2. 수익사업의 과세

법인세법 제60조에서 종교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익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²⁴⁾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규> 용역제공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임.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46012-123, 1995. 1. 14.)

24)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

1.2. 고유목적사업의 손금산입

내국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²⁵⁾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²⁶⁾ 지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이 높은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²⁷⁾

종교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²⁸⁾ 종교법인의 경우 이자소득, 분배금, 이자소득 및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50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 이는 다같이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세법상 지원의 차별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²⁹⁾

25)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26)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27) 통칙 2-14-21 <종교의 보급을 위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88.3.1. 개정)

28)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호. 2000. 12. 29. 개정.

29) 정진일, 비영리법인의 회계 및 과세제도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 p. 83.

<표 3-4> 비영리법인의 손금한도

구 분	한 도
일반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합산한 금액
학교, 사회복지, 국립대·서울대학교병원 조직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협동조합 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수익사업소득금액의 80%

주: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예규> 분리 과세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998. 12.28.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1004, 2000. 4. 22.)

<예규>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46012-4051, 1999. 11. 22.)

30)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1.3. 이자·배당소득

종교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의 이자·할인액 및 이익, 배당 또는 분배금에 대하여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³¹⁾

1988년 12월의 세법개정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 채권·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얻는 매매이익과 이자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이익배당과 건설이자의 배당금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1988년 세법개정에 의하여 모든 이자소득과 모든 배당소득이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되었다. 1994년에 지정기부금과 지급준비금의 이원적인 체계를 통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를 삭제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일함으로써, 비영리공익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간의 구분이 사라졌다. 이제는 모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³²⁾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

3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2) 통칙 4-1-15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변경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93.2.1. 신설)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³³⁾

<예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각 사업연도소득 포함할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2548, 1996. 9. 11.)

1994년 세법개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고 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으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종교법인은 신자들의 헌금과 기부금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헌금과 기부금을 금융기관에 유치하여 이자소득을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아닌 이자·배당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종교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4. 비열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표 3-5>와 같이 열거하고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3) <http://user.chollian.net/~jk10519-51.html>.

<표 3-5>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산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 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이상 열거한 사업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를 경영하는 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6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 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 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을 공급하는 사업

주 : 법인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 46012-1214, 2000. 5. 23.)

그러나, 세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것인가 또는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다.

첫째, 과세론자의 주장은 세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이나 수입이라 하

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부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세법상 영리법인의 소득을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비영리사업의 자산양도소득과 평가액은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과세반대론자의 주장은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범위는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서 제외한 소득은 비록 수익사업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사업 년도마다 특정소득 원천으로부터 반복적·규칙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상적 이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만일 반복적·규칙적으로 생기지 않는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법인에게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비경상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곧,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⁴⁾

2. 상속세·증여세법

상속 (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 10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³⁵⁾를 포함)으

34) 김상호, 비영리법인의 세무관리, 산경연구, Vol 7. No 1, 1990, p. 29.

35) 분여 : 분급(分給)을 뜻한다.

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표 3-6> 상속·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 99.12.28.)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개정 99.12.28.)

주 : 상속·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2.1.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의 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및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³⁶⁾ <표 3-7>은 상속세·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나

36) 통칙 16-13-2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재산>

- ① 법 제 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타내고 있다.

<표 3-7>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상속 및 증여재산의 비과세에는 여러 가지 한도와 조건을 두고 있는데 상속·증여재산이 종교법인에 귀속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 무가 없고 상속세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종교법인이 종교의 고유목적 사업에 규정한 바에 따라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때에는 상속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는, 사회구성원 전원이 혜택을 누린다고 보는 종교법인 및 기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는, 결국 부의 사회환원이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공익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예외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2.2. 공익법인의 충족요건

상속·증여세법상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충족요건을 갖추어야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공익사업에 출연(기부 또는 증여를 포함)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주식(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셋째,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로 있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사의 선임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않아야 한다.³⁷⁾

동일 주식보유를 5%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는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허용해왔다. 이는 동일종목 주식을 5~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내에,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내에, 5% 초과부분을 다른 종목 주식으로 대체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불이행 가산세를 1회에 한해 20%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예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 이후 내국법인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법 제 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849, 2000. 7. 11.)

37) 통칙 16-13-3 <이사선임 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등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12. 개정)

2.3.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종교법인에 재산출연 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출연목적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연 받아 출연자별로 출연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종교법인에 출연한 현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한 경우는 제외)은 제외한다.³⁸⁾

종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출연목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³⁹⁾

둘째,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 등과 취득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셋째,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사용실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부과한다.

38)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39) 통칙 4-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①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으로 본다. ②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text{출연재산의 평가가액} \times \frac{\text{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text{사 용 기 준 금 액}}$$

넷째,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금액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금액의 90/100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0.12.29. 신설)

다섯째,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을 때 증여세를 부과한다.

여섯째, 공익법인 등이 출연한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⁴⁰⁾

2.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종교법인등 기타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여부에 대하여 3인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이상인 공익법인이 해당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1998년 12월 31일 개정 시에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공익법인이 해당되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다시 개정하여 30억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규정하여 외

40) 통칙 38-39-7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시행령 제39조 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등 행위를 위한 지출금액 여부, 공익법인의 자금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해당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비율이 20%를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출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⁴¹⁾

2.5. 출연재산의 보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에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 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⁴²⁾

첫째, 출연재산 명세서.

둘째, 출연재산사용계획서 및 진도현황.

셋째, 매각재산 및 사용명세서.

넷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종교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는 출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도록 하고, 종교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종교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다.

3. 부가가치세법

41) 한국국세신문, 2000. 12. 7.

42)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2000.12.29. 개정)

3.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제조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더해지는 가치로서 재화 및 용역의 물리적·기능적 가치의 증가부분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는 사업자 자신이 새로이 창출한 가치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투입한 비용과 이윤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부가가치란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제조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적 일반소비세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등이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는 사업자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또 다른 사업자의 매입금액을 구성하고 그 다른 사업자는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각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중간단계의 사업자들이 생산한 총 부가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지자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3.2.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⁴³⁾ 종교법인은 <표 3-8>과 같이 해당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⁴⁴⁾

43) 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지 아니한다.

<표 3-8>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 4호)
1.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한다. 2.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한다. (80.12.13 개정)

주 : 1.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⁴⁵⁾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2000. 12. 29. 개정)
- ②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③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98.12.31 개정)
- ④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98.12.31 개정)

2.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는,⁴⁶⁾

- ①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4) 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한다.

4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②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③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지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3. 면세포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매출 거래자로부터 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거래자에게 지불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잔액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출 거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의무는 없으나, 매입 거래자에게 지불한 매입 부가가치세 또한 공제 받을 수 없어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면세사업자의 비용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만큼 공급가액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써, 가격경쟁 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다 할 것이다. 이에 면세사업자중 법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를 포기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함으로써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잔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제도가 면세포기이다.⁴⁷⁾

3.4. 면세포기의 대상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직업상 제공되는 인적용역, 종교·자선 등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

47) 통칙 12-47-1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다.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였으며 면세를 포기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⁴⁸⁾

4. 재산관련 세법

종교법인의 재산관련 세제는 토지·건물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국세 중에는 특별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있다.

4.1. 특별부가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정초기(1965.12.제정)에는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위주로 적용되었고 1977년부터 개별지원제도별로 적용기한을 1년, 2년, 5년 단위의 한시법 체제로 전환되었고,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어 종교법인은 동 법 제82조의 규정에 적용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내역을 <표 3-9>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법인유형별 특별부가세 신고내역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법 인 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영리법인	1,541	2,616,059	498,847
비영리법인	545	705,321	150,280
계	2,086	3,321,380	649,127

주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0.

48) www.taxboy.co.kr/giuppogi.htm.

4.1.1. 특별부가세 면제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한편, 추가적으로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성격인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⁴⁹⁾

하지만 종교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에 의거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 12. 29. 개정)

4.1.2.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

종교법인은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이 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법인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영리법인의 신고방법과 양도소득 특례 신고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⁵⁰⁾

첫째, 일반 영리법인의 신고방법이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⁵¹⁾

둘째, 양도소득특례신고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와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

49) 법인세법, 제99조.

50) 법인세법, 제103조, 제104조.

51) 법인세법, 제60조.

고납부 의무는 면제하는 방법이다.⁵²⁾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별부가세만 과세)

<표 3-10> 양도소득특별신고 세율

자 산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 2년 이상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전세권·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기타자산(보유기간 관계없음)	3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20% 30% 40%	- 300만원 900만원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		
미등기 양도자산	65%		
비상장주식	20% (중소기업의 주식 10%)		

주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예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 46012-525, 1997. 2. 20.)

4.2. 지방세

법인세법에서 종교법인을 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세법과 별도로 종교법인사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방세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교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

52) 법인세법, 제103조 제2항.

토지세를 용도구분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표 3-11>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 정당법에 설립된 정당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4.2.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임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신축, 증축, 개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을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의 2%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⁵³⁾

단,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3) 지방세법, 제107조.

4.2.2.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등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종교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부과한다.⁵⁴⁾

상속이 아니면서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1.5%가 부과되나 정부에 등록된 종교법인의 경우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0.8%가 부과된다.⁵⁵⁾

4.2.3. 재산세

재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⁵⁶⁾ 1990년 이전에는 토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이었으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종합토지세를 시행하면서 토지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제외되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빠르면 2002년부터 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시건물가격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건물에도 토지의 공시지가처럼 일정한 가격을 부여하여 매매가격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를 시범 시로 지정, 시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⁵⁷⁾

54) 지방세법, 제127조.

55) 지방세법, 제131조.

56) 지방세법, 제181조.

재산세는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인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해 부동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⁵⁷⁾

4.2.4.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려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1월1일 시행된 지방세로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각 소유자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한 다음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재산세 과세기준 일이 매년 5월1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로 되어있으나, 2002년부터는 주택 등의 매매 시 토지와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 일을 매년 6월1일로 통일하도록 개정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⁵⁸⁾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 같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인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단,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된다.

5. 주요국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57) 한국세정신문, 「공시건물가격제 도입」, 2001. 10. 14.

58) 지방세법, 제184조.

59) 한국세정신문,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2001. 10. 16.

5.1. 주요국 법인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종교법인이 영리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과세하는 반면, 일본은 일반영리법인세율인 30%보다 낮은 22%이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5년간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비영리법인이 지배하는 단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하고 있다.

<표 3-12> 주요국 종교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구분	영리소득	비영리소득	이자·배당소득
한국	영리법인과 동일과세	비과세	-과 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5년간 과세이연
미국	영리법인과 동일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 세 : 종교기관이 지배하는 단체로부터 수취하거나 부채를 통하여 얻은 자산으로부터 발생시
일본	저율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 세 : 고유목적사업이 안니 수익사업에서 발생시

5.2. 주요국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미국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미국은 증여를 받은 종교법인은 상속·증여세의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한해 상속·증여세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일본은 상속 및 유증에 의해 재산을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에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에 대해 수증자에게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⁶⁰⁾

<표 3-13> 주요국 종교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구 분	납세의무자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
한국	수증자	-공익법인 : 비과세 -공익법인외 : 과세
미국	증여자	-수증자인 종교법인은 과세와 무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전하는 증여자 : 비과세
일본	수증자	-종교 및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단체 : 비과세

주 : 비과세 되는 출연재산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60) 손원익, 전제서, p99.

제 2절 종교법인의 비과세 · 감면제도

1.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의의

1.1. 비과세

비과세는 세법자체에서 특정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세법 입법 당시부터 특정대상이 당해 세법의 전체 체계상 과세대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과세체계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하여 비과세 하는 경우와 단지, 조세 정책상의 이유로 특정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하는 경우가 있다.⁶¹⁾ 후자의 경우에는 그 실질에 있어 조세의 감면제도와 다를 바가 없으면 그 실질적인 효과가 같다. 그리고, 비과세는 인적비과세와 물적 비과세로 구분되며, 첫째, 인적비과세는 납세의무자 자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공적성격, 담세력, 사회 정책적 성격에서 착안되었다. 둘째, 물적 비과세는 과세객체에 대해서 그 성격 또는 용도 등에 착안해서 과세객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용도에 착안하였기 때문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도 하며, 다시 이에 대하여 공적 · 사회정책상 · 경제정책상의 것 등으로 분류되어 지고 있다.

1.2. 감면

감면이라 함은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과세처분에서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의 규정은 각 세목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목에 따라서는 이러한 감면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주마권세 또는 도축세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정책상 부당하거나 또는 성질상 불필요하다고 인정

61) 강민구, 지방세 감면제도의 해설, 지방세 제1호, 1998, p. 71.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면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하고 세액감면은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사정, 즉 특정사업에 대한 육성을 유도하거나 개개의 납세의무자의 담세력 약화 등 납세의무자 개인의 사정에 착안해서 일단 발생한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이다.⁶²⁾

2. 비과세·감면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조세의 비과세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등으로 인한 비과세 등이 있으며 감면규정으로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 공공법인을 위한 감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부의 특정대상에게 조세우대를 통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감소는 물론 조세형평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성, 사회·경제적 정책 목적을 위하여 비과세·감면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⁶³⁾ 여기서 종교법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필요성을 살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법인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공익단체, 법인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봉사·희생·보호·자선·교육·의료 등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교법인은 경제·사회활동관계에 있어서 단체가 전 일체로서 활동하고 그 구성분자인 개인의 모든 활동은 단체의 보조활동에 불과하며, 그 활동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경제적·법률적 효력도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및 법인에게 귀속된다.

셋째,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본질적인 용역에 대해 국가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부교부금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

62) 정태성,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10.

63) 한대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8.

구하고 재정적인 사유로 인하여, 간접적인 지원이 조세상의 특혜조치로 조세의 비과세 및 감면조치로서 지원함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넷째, 비과세 감면제도는 공익의 실현,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종교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과세되면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그의 운영자금을 기부나 특혜 등에 의하여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는 곧,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활동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법인의 출연된 재산이 사적으로 유용 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종교법인에 대해 과세와 규제를 가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 비과세·감면제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법인세 세수실적이 줄어들면서 전체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2001년 11월 5일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실적이 1996년 9조3천561억원, 1997년 9조4천 247억원, 1998년 10조7천758억원, 1999년 9조3천654억원으로 9조~1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작년에 17조8천 78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1년도는 경기침체에 따라 16조1천990억원으로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세입예산에는 16조2천875억원이 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4%에서 작년 19.2%로 높아졌으나 올해도 16.7%, 내년에는 15.6%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⁶⁴⁾ 2002년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점점 줄고 있는 세수는 더욱 감소되어, 정부는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감면이나 비과세 부분을 축소 내지 폐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95년 단체의장 선거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64) 세무신보, 2001.11.8, 통권 제3433호, p. 5.

열리면서 재정수요는 증가한 반면 재정은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우리의 지방재정의 구조는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이기보다는 중앙의 통제와 지원이 용이한 체제이다. 중앙은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대신 부족한 재원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⁶⁵⁾

1980년도에 중앙정부 예산은 8조8,142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예산은 2조6,042억원으로 지방예산 구성비율은 23%를 점유하고 있고, 20년이 지난 2000년도에는 중앙예산 124조 7,975억원, 지방자치단체예산은 55조 5,088억원으로 지방예산이 31%로 증가하고 있다.

<표 3-14> 국세·지방세 비율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국 세	78.8 <51.3>	78.9 <50.5>	79.2 <49.2>	79.8 <46.5>	80.3 <48.9>
지방세	21.2 <48.7>	21.2 <49.5>	20.8 <50.8>	20.2 <53.5>	19.7 <51.1>

주 : 1. < >는 양여금·교부금·보조금 고려기준.

2. 재경부, 『조세개혁』, 2000. 5.

하지만, 오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총 세 수입 중 국세가 80%내외를, 지방세가 2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년 기준으로 일본의 지방세 수입비중이 41.2%이고 미국은 41.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지방세의 비중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재원의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양과 질이 선진국과 달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여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65) 정태성, 전개논문, p. 1.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응익원칙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세의 형평성 또는 공평성을 들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가 소득재분배를 역행하고 세수의 손실, 특정기업·특정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한 형평성에 역행, 시장기능 왜곡초래, 부문간·계층간 세 부담 형평성의 저해하는 등의 이유와 공평과세와 형평과세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축소 및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이 IMF와 더불어 더욱 힘든 상태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기보다는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재정자립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 논하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세수확보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여 놓은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세·감면 결정권은 국가가 독점하므로 지방재정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과세자주권 확립차원에서 비과세·감면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안.

둘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산업 정책적 목적, 사회 정책적 목적 및 부담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공익상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안.

셋째, 목적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과세 전환하여야 하는 안.

넷째, 시한부 감면제도(일몰법⁶⁶⁾) 안. 즉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정책세제이므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감면할 수 없도록 한다.

다섯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세목만 감면함을 원칙으로 하는 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으로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목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제외한다.

2001년도 정기국회제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66) 일몰법, sun-setlaw :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3~7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180개 감면 중 43개 폐지 16개를 대폭 축소한다고 제출하였다.⁶⁷⁾

67) 세무신보, 2001.10. 11, 통권 제3425호, p. 32.

제 3절 종교법인 조세제도의 주요사항

1. 종교법인의 영리활동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인력의 양산, 재정수지의 적자현상은 민간에 의한 비영리공익사업의 확대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국가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해야 할 공익증진의 일부분을 민간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으며,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⁶⁸⁾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영리 아닌 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영리활동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영리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영리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비영리법인으로 존속하게 된다. 다만, 영리행위인 수익사업과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으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사정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으로 수익으로 인한 소득의 사용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인세를 적용하여 종교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비영리법인들이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조세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 중 종교법인만 단독적으로 세법에 열거하여 명시된

68) 김대영, 과세쟁점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 과세의 개선방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12.30, p. 1.

규정은 없으며, 세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사업자로 열거된 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현재 일본은 1951년 종교법인법을 제정·시행하여 1995년 현재 18만 4천여 개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종교법인과 관련된 법규정이 제정되어 설립·관리·육성·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종교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법인의 세제혜택 받는 부분에 대하여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하여 일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여 무조건적인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납세의식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조세감면 축소보다는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세제혜택 및 과세를 해야한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정당성을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2000년 3월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에게 사업자와의 거래 시 정 규영수증을 확보, 이를 과세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종교법인과 거래하는 기업의 세원을 포착하는 동시에 일부 선진국가들이 실시중인 '종교세' 등을 장차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사전확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었으며, 그 다음날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법인 과세자료 제출 추진 및 종교세 추진 중'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였지만 국세청이 종교법인 등의 반발을 의식한 교육지책이며, 실제 내부적으로 종교법인 및 공익법인단체 등에 대한 과세를 줄곧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재계와 학계 등의 일부 세금전문가들도 이런 국세청 입장에 적잖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⁶⁹⁾ 이에 대하여 종교법인들은 설립취지·목적·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고 종교법인의 세제혜택의 정당성을 밝힘과 동시에 종교법인의 사회기여성과 공공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가장 중요한 재정의 투명성을 인식하여 폐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재정과 사업계획을 밝혀 자연스럽게 종교법인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기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69) 문화일보, 「국세청 - 종교세 추진 중」, 2000. 3. 16.

국세청은 비영리·공익법인들에 대해 사후관리 위주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우선, 비영리·공익법인관련 기본 자료들을 전산입력·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는 것이다.⁷⁰⁾

종교법인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각박한 사회에서 작은 등불로서 위치를 지키며, 국가는 기존 조세를 정치적·일률적 또는 단발적으로 축소 내지 과세하는 방안이 아닌 효과적으로 충분히 분석·검토한 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세제발생과 제반 현 세법의 적정성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종교법인과 관련된 실무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종교법인의 일반현황, 수익사업, 조세제도, 기타사항을 다음장에서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70) Digital한국세정신문, 제3273호, 2001. 7. 5.

제 4장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제 1절 대상선정과 설문내용

1. 대상선정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관련된 현황, 재산관리 및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자원제공자, 회계담당자, 감독기관, 기타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설문대상을 포괄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문 대상으로 종교법인의 자원제공자이면서 실무적으로 세무 및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한정하였다.

설문대상 법인은 2000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종교법인 중 재단법인 235개, 사단법인 151개, 총 386개이다. 이 중 분석대상으로 중요시되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의 법인 341개를 실제 선정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44.6%에 해당하는 152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개신교는 52개 법인, 불교 40개 법인, 천주교 51개 법인, 유교 9개 법인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2. 설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종교법인들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종교법인들은 세무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산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기타 조세법 상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152개 종교법인의 세무 및 회계실무담당자에게 종교법인의 일반현황에 관한 설문 5개,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설문 3개,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설문 10개, 기타 7개로 총 25개 문항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설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¹⁾

첫째, 종교법인의 일반현황에 관한 항목에는 해당 법인의 신도 수, 재원조달 방법, 연간수입의 정도 등에 관한 내용의 5개 문항.

둘째,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항목에는 주된 수입원과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각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관한 3개 항목.

셋째,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항목에는 법인세법, 재산관련세법으로 분류하여 세법상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 기부금 기타 10개 문항.

넷째, 기타에 관한 항목에는 한국종교재산기본법, 종교법인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비과세 업무처리 시 세무공무원들의 처리사항, 종교법인 조세제도의 개선방향을 잡고자 세무 및 회계담당자로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등 7개 문항이 들어 있다.

종교법인 152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개신교는 52개 법인, 불교 40개 법인, 천주교 51개 법인, 유교 9개 법인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종교별 설문지 회수현황

구 분	발송표본	회수현황		회수 계	
	법인 수	재단법인 수	사단법인 수	법인 수	회수 율
개신교	52	13	4	17	32.7
불 교	40	6	3	9	22.5
천주교	51	19	2	21	41.2
유 교	9	5	-	5	55.5
계	152	43	9	52	34.2

71) 부록, 「설문지」, 참조.

제 2절 설문분석

1. 종교법인의 일반현황

1.1. 종교법인의 평균 신도 수

종교별 평균 신도 수의 본론을 요약하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2> 종교법인의 평균 신도 수

구 분	1,000명 미만		1000 ~ 2,000명 미만		2,000 ~ 3,000명미만		3,000 ~ 4,000명 미만		4,000명 이상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	-	-	-	1	5.8	2	11.8	14	82.4	17	100
불 교	2	22.2	2	22.2	-	-	-	-	5	55.6	9	100
천주교	5	23.8	-	-	2	9.4	1	4.8	13	62.0	21	100
유 교	1	20.0	-	20.0	1	20.0	1	20.0	2	40.0	5	100
계	8	15.4	2	3.9	4	7.7	4	7.7	34	65.3	52	100

개신교의 경우 82.4%가 평균 신도 수 4,000명 이상이며, 나머지는 2,000명~4,000명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불교의 경우 4,000명 이상인 법인은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2,000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62%가 4,000명 이상이며 나머지는 4,000명 미만에 분포되어 있으며, 유교의 경우 40%가 4,000명 이상의 법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역시 4,000명 미만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한 종교법인의 신도 수는 크게는 4,000명 이상이며 작게는 1,000명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1.2. 조세 및 회계실무교육 이수

<표 4-3> 조세 및 회계실무교육 이수 현황

구 분	1회		2회		3회 이상		없다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	-	2	11.8	5	29.4	10	58.8	17	100
불 교	3	33.3	-	-	1	11.1	5	55.6	9	100
천주교	4	19.0	4	19.0	3	14.4	10	47.6	21	100
유 교	4	80.0	1	20.0	-	-	-	-	5	100
계	11	21.2	7	13.5	9	17.3	25	48.0	52	100

종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조세 및 회계실무교육을 공인된 기관에서 이수 받은 사항을 조사한 결과, <표 4-3>와 같이 개신교는 58.8%, 불교는 55.6%, 천주교는 47.6%가 한번도 조세 및 회계 실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법인 회계의 투명성과 세무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복잡 다양한 세법을 적소 적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1.3. 주 재원조달 방법

<표 4-4> 주 재원조달 방법

구 분	현금(시주)		개인 및 단체기부금		수익사업		기 타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8	47.0	2	11.8	1	5.9	6	35.3	17	100
불 교	5	55.6	2	22.2	1	11.1	1	11.1	9	100
천주교	13	61.9	5	23.8	1	4.8	2	9.5	21	100
유 교	-	-	-	-	1	20.0	4	80.0	5	100
계	26	50.0	9	17.3	4	7.7	13	25.0	52	100

종교법인의 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표 4-4>를 살펴보면, 현금(시주)과 개인 및 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67.3%를 차지하며, 이 중 현금(시주)은 개신교 47%, 불교 55.6%, 천주교 61.9%로 답변하였으며, 기타로는 회원들의 회비, 기본재산 수입금과 성직자의 급여(기본 생활비)를 다시 법인에게 되 돌려주어 법인운영에 도움을 주는 등으로 답변을 해 주었다. 이에 종교법인의 재원조달은 현금(시주)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가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주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전체의 7.7%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연간수입

<표 4-5> 연간 수입

구 분	5억미만		5~10억 미만		10~15억 미만		15~20억 미만		20억이상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13	76.4	1	5.9	-	-	1	5.9	2	11.8	17	100
불 교	4	44.4	3	33.3	-	-	-	-	2	22.2	9	100
천주교	3	14.2	4	19.0	3	14.3	1	4.8	10	47.7	21	100
유 교	5	100	-	-	-	-	-	-	-	-	5	100
계	25	48.0	8	15.4	3	5.8	2	3.8	14	27.0	52	100

<표 4-5>에서 보면 종교법인의 연간수입이 5억 미만인 법인은 개신교 13%, 불교 4%, 천주교 14.2%, 유교 100%이며 20억 이상인 법인은 개신교 11.8%, 불교 9%, 천주교 21%로 천주교가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응답한 법인의 관할 지역이 시, 구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며, 종교법인의 수입에 대하여 신뢰성과 투명성 있는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종교법인의 수익사업

2.1. 수익사업 중 주된 수입원

<표 4-6> 수익사업 중 주된 수입원

구 분	도·소매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주식·채권		기 타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	-	4	23.5	7	41.2	-	-	6	35.3	17	100
불 교	1	11.1	2	22.2	2	22.2	-	-	4	44.5	9	100
천주교	2	9.5	3	14.3	6	28.6	-	-	10	47.6	21	100
유 교	-	-	4	80.0	1	20.0	-	-	-	-	5	100
계	3	5.6	13	25.0	16	31.0	-	-	20	38.4	52	100

<표 4-6>을 보면, 종교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중 주된 수입원은 이자수입으로 개신교 23.5%, 불교 22.2%, 천주교 28.6%, 유교 20%로서 전체의 31%에 해당되며, 도·소매수입은 전체의 5.6%, 부동산 임대수입은 25%, 기타로서는 전혀 수익사업을 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개발, 가구 또는 식품제조, 출판업, 병원운영 등 몇 몇 소수의 법인이 답변을 해왔으며, 주식이나 채권으로 주된 수입원을 하는 법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총수입에 대한 수익사업분

<표 4-7> 총수입에 대한 수익사업분

구 분	20%이하		20~40%이하		40~60%이하		60~80%이하		80%이상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5	62.5	1	12.5	-	-	2	25.0	-	-	8	100
불 교	3	60.0	-	-	-	-	-	-	2	40.0	5	100
천주교	18	100	-	-	-	-	-	-	-	-	18	100
유 교	1	50.0	-	-	-	-	1	50.0	-	-	2	100
계	27	82.0	1	3.0	-	-	3	9.0	2	6.0	33	100

<표 4-7>을 보면, 종교법인의 연간 총수입 중 수익사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

중은, 개신교인 경우 20%이하가 62.5%, 20~40%이하 12.5%, 60~80%이하 25%를 나타내고 불교의 경우 20%이하가 60%, 80%이상인 40%를 나타내고, 천주교는 20% 이하가 100%이며, 유교는 20%이하 50%, 60~80%이하 50%로 나타났으며,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20%이하가 전체의 82%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되, 운영수입 전체 수입에서 크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수익사업 수입의 목적사업 사용도

<표 4-8> 수익사업 수입의 목적사업 사용도

구 분	20%이하		20~40%이하		40~60%이하		60~80%이하		80%이상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	-	-	-	-	-	2	28.6	5	71.4	7	100
불 교	-	-	-	-	1	20.0	-	-	4	80.0	5	100
천주교	4	19.0	1	4.8	2	9.5	1	4.8	13	61.9	21	100
유 교	-	-	-	-	1	25.0	1	25	2	50.0	4	100
계	4	10.8	1	2.7	4	10.8	4	10.8	24	64.9	37	100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중을 <표 4-8>로서 살펴보면, 개신교는 60~80%이하가 28.6%, 80%이상인 71.4%로 나타났으며 불교의 경우 40~60%이하인 20%, 80%이상은 80%로 나타났으며, 천주교는 20%이하가 19%, 20~40%이하가 4.8%, 40~60%이하가 9.5%, 60~80%이하가 4.8%, 80%이상은 61.9%로 나타났으며, 유교는 40~60%가 25%, 60~80%이하인 25%, 80%이상은 50%로 나타났으며, 수익사업 수입을 목적사업에 80%이상 사용하는 법인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3.1. 조세법 이해도

<표 4-9> 조세법 이해도

구 분	아주 잘 이해한다		이해한다		보통이다		잘 이해하지 못 한다		전혀 이해하지 못 한다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	-	6	35.2	9	53.0	2	11.8	-	-	17	100
불 교	1	11.1	1	11.1	6	66.7	1	11.1	-	-	9	100
천주교	4	19.0	4	19.0	7	33.4	6	28.6	-	-	21	100
유 교	-	-	-	-	3	60.0	2	40	-	-	5	100
계	5	9.6	11	21.2	25	48.0	11	21.2	-	-	52	100

종교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표 4-9>를 살펴보면, 아주 잘 이해한다 불교 11.1%, 천주교 19%로 나타났고, 이해한다 개신교 35.2%, 불교 11.1%, 천주교 1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개신교 53%, 불교 66.7%, 천주교 33.4%, 유교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이해하지 못한다 개신교 11.8%, 불교 11.1%, 천주교 28.6%, 유교 40%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회계 및 세무담당자들이 세무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무관리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 등 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2. 실무상 조세법

<표 4-10> 실무상 조세법

구 분	아주 복잡하다		복잡하다		보통이다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1	5.9	11	64.7	5	29.4	-	-	-	-	17	100
불 교	-	-	4	44.4	5	55.6	-	-	-	-	9	100
천주교	3	14.3	9	42.9	7	33.3	2	9.5	-	-	21	100
유 교	-	-	3	60.0	2	40.0			-	-	5	100
계	4	7.8	27	51.9	19	36.5	2	3.8	-	-	52	100

회계 및 세무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조세법을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시 느끼는 조세법은 <표 4-10>과 같이, 전체 응답한 중 아주 복잡하다 7.8%, 복잡하다 51.9%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다 36.5%, 간단하다 3.8%로 나타났다. 예로서 종교법인의 범위가 세법간에 불일치하여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로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세제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3.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표 4-11>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구 분	비과세해야한다		현행대로 과세해야한다		경감세율을 적용해야한다		기 타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11	64.7	2	11.8	4	23.5	-	-	17	100
불 교	2	22.2	2	22.2	5	55.6	-	-	9	100
천주교	8	38.0	6	28.6	6	28.6	1	4.8	21	100
유 교	1	20.0	-	-	4	80.0	-	-	5	100
계	22	42.3	10	19.2	19	36.6	1	1.9	52	100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같이 동등하게 세제가 부과되는 현실이다.

<표 4-11>에서 보듯이,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 해야 한다가 전체 응답법인 중 42.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가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19.2%, 기타(무응답) 1.9%로 나타났다. 위 결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익의 일부분을 담당하고있는 법인으로서, 정부는 직접적·재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며, 답변자의 61.5%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내지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3.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표 4-1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 분	비과세 해야한다		현행대로 과세해야한다		경감세율을 적용해야한다		기 타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12	70.6	1	5.9	4	23.5	-	-	17	100
불 교	5	55.6	2	22.2	2	22.2	-	-	9	100
천주교	9	42.9	6	28.6	4	19.0	2	9.5	21	100
유 교	4	80.0	-	-	1	20.0	-	-	5	100
계	30	57.7	9	17.3	11	21.1	2	3.9	52	100

<표 4-12>와 같이, 종교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비과세 해야 한다는 점에는 개신교 70.6%, 불교 55.6%, 천주교 42.9%, 유교 80%로 답변하였으며, 경감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에서 개신교 23.5%, 불교 22.2%, 천주교 19%, 유교 20%로 답변하였으며, 현행대로 과세해야한다는 점에서 개신교 5.9%, 불교 22.2%, 천

주교 28.6%이며, 기타(무응답)는 9.5%로 답변하였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과세는 전체 응답자의 75%가 비과세 내지 일부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활동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종교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의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5. 기부금의 손금한도 제한

<표 4-13> 기부금의 손금한도 제한

구 분	전부 손금인정		현행대로 일부만 인정		전혀 인정받을 필요없다		기 타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12	70.6	4	23.5	-	-	1	5.9	17	100
불 교	8	88.9	1	11.1	-	-	-	-	9	100
천주교	14	66.6	5	23.9	-	-	2	9.5	21	100
유 교	3	60.0	-	-	-	-	2	40.0	5	100
계	37	71.1	10	19.3	-	-	5	9.6	52	100

종교법인에 관한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일부만 인정해 주는 현 제도에 대하여 <표 4-13>을 보면, 전액손금을 인정해야 한 다라고 답변한 것은 개신교 70.6%, 불교 88.9%, 천주교 66.6%, 유교 60%, 총 71.1%로 가장 높게 답변하였다.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다. 법정기부금 중 정당후원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종교법인의 기부금보다 세제상의 혜택을 더 크게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3.6. 배당소득에 대한 준비금 설정

<표 4-14> 배당소득에 대한 준비금 설정

구 분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		배당소득만 설정한다		모두 설정한다		모두 설정할 필요 없다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5	29.4	5	29.4	5	29.4	2	11.8	17	100
불 교	2	25.0	-	-	6	75.0	-	-	8	100
천주교	9	50.0	-	-	9	50.0	-	-	18	100
유 교	-	-	-	-	3	100	-	-	3	100
계	16	34.8	5	10.9	23	50.0	2	4.3	46	100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준비금설정이 허용되는 것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준비금설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개신교 29.4%, 불교 25%, 천주교 50%로 답변하였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 모두 설정 가능토록 한다. 개신교 29.4%, 불교 75%, 천주교 50%, 유교 100%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세법 개정 시마다 여러 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현재 이자소득에 한해서만 준비금 설정이 허용되는 것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토록 하여 비영리활동을 고무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3.7. 특별부가세 면제 한시적 적용

<표 4-15> 특별부가세 면제 한시적 적용

구 분	영구적으로 적용해야한다		한시적으로 적용해야한다		적용할 필요 없다		기타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14	82.3	1	5.9	2	11.8	-	-	17	100
불 교	8	88.9	1	11.1	-	-	-	-	9	100
천주교	17	80.9	1	4.8	2	9.5	1	4.8	21	100
유 교	5	100	-	-	-	-	-	-	5	100
계	44	84.6	3	5.8	4	7.7	1	1.9	52	100

<표 4-15>와 같이, 종교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개신교 82.3%, 불교 88.9%, 천주교 80.9%, 유교 100%로 총 84.6%가 영구적으로 특별부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특별부가세가 2003. 12. 31.까지 면제 적용시한을 3년이라는 특정기한을 설정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2001년 세법개정에 폐지(안)으로 상정된 상태이나, 정부는 폐지 또는 한시적인 조세지원이 아닌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조세감면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8. 출연재산 주식 5%이상 보유금지 조항

<표 4-16> 출연재산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조항

구 분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5%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포기 경우 증여세 미부과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		기 타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4	23.6	10	58.8	-	-	3	17.6	17	100
불 교	3	33.3	4	44.5	2	22.2	-	-	9	100
천주교	7	33.3	7	33.3	3	14.4	4	19.0	21	100
유 교	-	-	3	60	-	-	2	40.0	5	100
계	14	27.0	24	46.1	5	9.6	9	17.3	52	100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표 4-16>과 같이, 이에 응답자들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개신교 23.6%, 불교 33.3%, 천주교 33.3%, 총 27%로 답변하였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5%초과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신교 58.8%, 불교 44.5%, 천주교 33.3%, 유교 60%, 총 46.1%

로 가장 높게 답변을 해주었다

주식보유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기업가가 더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하여 주식 5%초과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하여 기업가나 재산가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한 것이다.

3.9. 개발제한구역 내 종합토지세 및 기타 세제 부과

<표 4-17> 개발제한구역 내 종합토지세 및 기타 세제 부과

구 분	현행대로 과세해야한다		감면해야한다		일부 감면해야한다		기 타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2	11.7	13	76.5	2	11.8	-	-	17	100
불 교	-	-	6	66.7	3	33.3	-	-	9	100
천주교	5	23.8	12	57.2	4	19.0	-	-	21	100
유 교	-	-	4	80.0	1	20.0	-	-	5	100
계	7	13.5	35	67.3	10	19.2	-	-	52	100

종교법인은 대체적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임야 보유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의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사용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및 기타 제한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매년 종합토지 세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키고 있는 점에 대하여 <표 4-17>를 살펴보면, 현행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전체 응답자의 13.5%가 답변하였으며, 감면해야 한다는 개신교 76.5%, 불교 66.7%, 천주교 57.2%, 유교 80%, 총 67.3%로 제일 높으며, 일부 감면해야 한다는 전체 응답자의 19.2%가 답변하였다.

행정적으로 제한 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사용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하여, 감면 내지 비과세를 적용하여 무거운 세 부담

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3.10. 부동산 취득시 비과세 유예기간

<표 4-18> 부동산 취득시 비과세 유예기간

구 분	1년		3년		5년		7년		9년이상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1	6.7	6	40.0	4	26.6	3	20.0	1	6.7	15	100
불 교	-	-	2	2.5	5	62.5	-	-	1	12.5	8	100
천주교	-	-	5	23.8	12	57.2	3	14.2	1	4.8	21	100
유 교	-	-	1	20.0	4	80.0			-	-	5	100
계	1	2.0	14	28.7	25	51.0	6	12.2	3	6.1	49	100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한 적정한 비과세 유예기간을 설정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표 4-18>과 같이, 응답자들은 1년 2%, 3년 28.7%, 5년 51%로 가장 높으며, 7년 12.2%, 9년 이상이 6.1%로 답변하였다.

응답자들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보다는, 경기침체 및 각종 사회적 여건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5년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다.

4. 기타

4.1. 감면 및 비과세 처리 시 세무공무원들의 반응

<표 4-19> 감면 및 비과세 처리 시 세무공무원들의 반응

구 분	잘 처리하여준다		보통이다		어렵게 처리하여준다		안 해준다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1	6.7	9	60	5	33.3	-	-	15	100
불 교	-	-	5	62.5	3	37.5	-	-	8	100
천주교	6	28.6	11	52.4	4	19.0	-	-	21	100
유 교	1	20.0	2	40.0	2	40.0	-	-	5	100
계	8	16.3	27	55.1	14	28.6	-	-	49	100

<표 4-19>와 같이, 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감면 및 비과세 처리 시 해당공무원들의 반응은, 잘 처리하여 준다는 전체 응답자의 16.3%, 보통이다 55.1%, 어렵게 처리하여준다 28.6%로 답변하였으며, 규정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대하여 즉시 감면 및 비과세 처리를 해 주지 않고 규정에 없는 다른 서류를 요구하거나, 기타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등 종교담당자들을 힘들게 만든다.

세무공무원들은 종교법인에 대하여 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여, 거부반응 없이 세법의 규정대로 감면 및 비과세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4.2. 종교법인의 지도·감독업무 위임에 따른 각 시·도의 지도·감독 사항

<표 4-20> 종교법인의 지도·감독업무 위임에 따른 각 시·도의 지도·감독 사항

구 분	엄격하다		보통이다		무관심하다		기 타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1	6.2	12	75.0	1	6.2	2	12.6	16	100
불 교	2	25.0	6	75.0	-	-	-	-	8	100
천주교	4	19.0	11	52.4	1	4.8	5	23.8	21	100
유 교	-	-	5	100	-	-	-	-	5	100
계	7	14.0	34	68.0	2	4.0	7	14.0	50	100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182호)이 2001. 3. 31.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거 법인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이관(위임)됨에 따라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질의 결과, <표 4-20>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7% 엄격하다, 68% 보통이다, 4% 무관심하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기타에서는 과잉 반응을 하여 어렵다, 각 종교별 중앙협의회는 그대로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데 개별 법인들은 시·도에서 관리, 감독을 받으니 위상이 떨어져 피해가 크다, 행정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비 등 14%의 답변을 하였다.

4.3. 한국종교재산기본법 제정인지도

<표 4-21> 한국종교재산기본법 제정인지도

구 분	잘 모른다		약간 알고있다		아주 잘 안다		기 타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5	29.4	7	41.2	5	29.4	-	-	17	100
불 교	6	66.7	3	33.3	-	-	-	-	9	100
천주교	8	38.1	13	61.9	-	-	-	-	21	100
유 교	3	60.0	2	40.0	-	-	-	-	5	100
계	22	42.3	25	48.0	5	9.7	-	-	52	100

정부의 토지 정책 및 세제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종교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과, 그 징수과정의 혼란으로 인하여 종교재산기본법을 제정·추진 중으로써 일괄적인 종교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종교법인 실무자들에게 종교재산기본법안이 제정·추진 중인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신교 29.4%, 불교 66.7%, 천주교 38.1%, 유교 60%가 잘 모르고 있으며, 개신교 41.2%, 불교 33.3%, 천주교 61.9%, 유교 40%가 약간 알고 있으며, 개신교 29.4%만이 아주 잘 안다라고 답변하였다.

종교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교재산기본법안은 <표 4-21>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42.3%가 모르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종교재산기본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고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종교법인 실무자 및 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4. 한국종교재산기본법 필요성

<표 4-22> 한국종교재산기본법 필요성

구 분	불필요 하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기 타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	-	3	17.6	13	76.5	1	5.9	17	100
불 교	1	11.2	4	44.4	4	44.4	-	-	9	100
천주교	-	-	3	14.3	16	76.2	2	9.5	21	100
유 교	-	-	-	-	3	75.0	1	25.0	4	100
계	1	2.0	10	19.6	36	70.6	4	7.8	51	100

현행 법률이 불교, 유교 등 특정종교에 한해서만 특별법의 형식으로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교관계법 등의 통일적인 법체계가 없으며 세금이 과세되고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등 종교재산이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자 종교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필요성을 절의한 결과 <표 4-22>를 살펴보면, 불필요하다 2%, 보통이다 19.6%, 필요하다 70.6%로 가장 높으며, 기타로는 법의 제정이 법인에 유리하면 몰라도 종교의 특수성을 인지 못하여 법이 또 하나의 제한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등, 무응답 7.8%로 답변하였다.

4.5.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 대상

<표 4-2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 대상

구분	축소해야 한다		현행대로 유지		확대해야 한다		기타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7	41.1	5	29.5	2	11.8	3	17.6	17	100
불교	2	22.2	5	55.6	1	11.1	1	11.1	9	100
천주교	6	28.6	6	28.6	6	28.6	3	14.2	21	100
유교	2	50.0	2	50.0	-	-	-	-	4	100
계	17	33.3	18	35.4	9	17.6	7	13.7	51	100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1998년 12월 31일 개정 시에는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공익법인이 해당되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다시 개정하여 30억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규정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다.

<표 4-23>과 같이, 향후 세무확인검사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개신교 41.1%, 불교 22.2%, 천주교 28.6%, 유교 50%가 축소해야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개신교 29.5%, 불교 55.6%, 천주교 28.6%, 유교 50%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일 높게 답변하였다. 또한, 개신교 11.8%, 불교 11.1%, 천주교 28.6%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현행대로 유지 및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53%에 해당하여 종교법인의 투명성과 사회성을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기타(무응답)로는 불필요하다, 종교의 특수 상 외부의 간섭을 안 받겠다,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 등의 13.7%의 답변이 있었다.

4.6. 재무보고기준제정,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

<표 4-24> 재무보고기준제정,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

구분	필요하다		현행대로 유지		필요없다		기타		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법안수	구성비
개신교	1	6.3	5	31.2	8	50.0	2	12.5	16	100
불교	4	44.4	4	44.4	1	11.2	-	-	9	100
천주교	6	28.6	5	23.8	6	28.6	4	19.0	21	100
유교	-	-	1	25.0	2	50.0	1	25.0	4	100
계	11	22.0	15	30.0	17	34.0	7	14.0	50	100

종교법인의 재무보고기준의 제정과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표 4-24>로 살펴보면, 개신교 6.3%, 불교 44.4%, 천주교 28.6%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개신교 31.2%, 불교 44.4%, 천주교 23.8%, 유교 25%가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자고 답변하였다. 또한, 개신교 50%, 불교 11.2%, 천주교 28.6%, 유교 50%가 필요 없다고 답변하여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교법인의 투명성과 사회성을 인식하여 밖으로 드러내어 발전적인 모습을 종교계가 솔선 수범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무응답)로는 재무보고기준의 제정은 필요하나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사려됨, 법인자체 결의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함 등 14%로 답변하였다.

4.7.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

본 설문지에 응답한 회계 및 세무실무자들의 종교법인 조세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종교법인 활동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혜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둘째, 종교법인의 비업무용 기본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감면, 폐지 및 최소한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종교법인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세법을 종교법인들이 공유하며 문제점을 대처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

넷째, 종교법인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탈법을 일삼는 단체가 있으니 행정당국에서는 선별 심사하여 각 종교법인이 원래 목적대로 육성되도록 적극적이고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각 지방별 조례가 통일되지 않아 종교계가 경영하는 의료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별로 취득세가 무분별하게 50% 또는 100%감면하고 있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여섯째,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

일곱째,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현 조세법은 다양한 종교법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복잡하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한 조직과 편제의 불비로, 복잡한 조세제도를 수용하기 어려우니 간편하게 개정해야 한다.

제 3절 종교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 및 회계 실무교육

조세 및 회계기준이 이윤추구관점에서 분류하여, 주된 관심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영리기업에 집중되어 조세와 기업회계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가 연구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비영리회계에 대한 관심은 낮았으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종교법인의 재무보고기준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표 4-3>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전체 응답자중 48%에 해당하는 종교법인 실무자들이 업무와 관련 조세 및 회계실무교육을, 공인된 기관에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종교법인의 주 수입원이 신자들의 헌금이나 기증을 수입원으로 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하였고, 제공된 자원의 관리에 대한 수탁책임의 보고로서,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만으로 충족되어왔다.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와 같이, 법인세 등의 처리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등이 교육에 대한 실무자들의 관심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가 발달하고, 종교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표 4-2> 종교법인의 신도 수, <표 4-5> 연간수입, <표 4-6> 수익사업에서 보듯이 법인의 규모와 사업도 커지고 있다. 세법도 매년 개정되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종교법인 실무자들이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관청 내지 종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재무보고기준이 정립될 시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조세법의 간이성

우리나라는 매년 세법개정을 하며 이로 인해 세제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세제가 복잡한 것은 공평과세를 위한 내용상의 정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상 난립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인식하고 세제를 간소화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세법개정은 오랜 기간 활발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1981년, 1986년이며, 이후 10년 간 세법개정을 하지 않고 계속 지속해 왔다. 예로서 우리나라 현 세제에서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을 인정하는 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한 단체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가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지원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세법간에 불일치하여 종교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표 4-9> 조세법 이해도, <표 4-10> 실무상 조세법 적용부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7.8%가 아주 복잡하다, 51.9%가 복잡하다고 답변하여 실무자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납세자의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가 복잡하게 되면 납세자는 각각의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납세자의 비용이 조세부담액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조세법 개정이 체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제정자의 위치가 아닌 납세자의 위치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이자·배당소득

1994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이전에는 의료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 세법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만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했었던 것을 모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 제도가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층 더 이바지하려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준비금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14> 배당소득에 대한 준비금설정과 관련된 질의에 배당소득도 준비금을 설정해야한다고 응답한 답변자는 전체의 50%로, 현재 미국,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은 수동적 소득이라 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일본과 같이,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나 기부금 등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종교법인 뿐만 아니라, 취약한 비영리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종교법인은 당해연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원천징수 중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합과세신고납부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때에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분리과세원천징수를 택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때에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즉, 종합과세신고납부방법을 택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 가능하므로,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종교법인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분리과세원천징수방법으로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수익사업이 있는 종교법인은 종합과세신고납부방법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환급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분리과세원천징수방법은 이자소득신고가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종교법인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원천징수제도를 일원화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과세신고납부방법으로만, 신고하게 하거나 이자소득을 원천적으로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종교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없앴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부금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거나, 일정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된다.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는 법인세법 제24조에 열거된 법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열거된 기부금과 정치자금 등이 있으며, 종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부분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표 4-13> 종교법인의 기부금손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71.1%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차별화 된다면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일수록 더 큰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법정기부금과 부분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현행 세제 혜택의 차이가 기부금의 공익성 정도에 의하여 범위가 이루어 졌다면, 모두 설명되고 있지 않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정치자금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보다 세제상 유리한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의 경우 자선·교육·종교·과학·사회복지 등의 공익을 위한 기부금이 정치적 기부금보다, 세제상 더 유리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교법인은 자선·교육·의료 등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대부분 단체의 설립 당시 출연 받은 재산을 활용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수익사업을 통한 소득으

로 조달되고 있다. 종교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부금과 관련된 세제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정부주도의 공익사업을 위한 법정기부금과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을 위한 지정기부금 대상간의 세제상의 혜택의 격차를 줄여서, 현재 지정기부금의 대상인 종교법인과 기타 공익법인 등이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부금이 유인되어 공익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5. 특별부가세 폐지(안)의 부당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였다.(2000.12.29. 개정) <표 4-15>의 특별부가세 면제 한시적 적용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응답자 중 84.6%에 해당하는 답변자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2001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를 인하(평균 23%)에 따라 부동산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 지원되어, 조세유인 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를 삭제하려고 한다.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이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분야가 분명하고, 현대사회가 다양화·다변화됨에 따라 그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공익사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전체의 각 분야에서 더 많은 공익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

시점에 종교·학교·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공익법인들에게도 면제혜택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법안마저 실효성상실, 중복지원, 조세유인약화라는 사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한계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해야 할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일부분을 민간에게 위임하였고, 정부는 조세정책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시행하여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 문화, 교육, 의료, 종교, 사회운동 등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재정을 제공해야 되지만, 경제적인 사유로 간접적인 조세상의 지원이 세제감면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폐지안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6. 주식보유 제한

종교법인 기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는 경우,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그 공익법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는 것이 공익사업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주식을 분산소유하면 그만큼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 낮아지게 되며,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1999년 세법개정에서는 동일종목 주식 5%이상의 보유 금지의 무 외에 그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종교법인은 <표 4-5>와 같이 주식·채권으로 주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주식으로 인한 위험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종목 주식보유 한도와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주식을 현금화해서 출연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선의의 기업가가 종교법인 및 기타 공익법인에 더 많은 주식을 출연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동일종목 주식보유 한도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기업가나 재산가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방안과 기존의 5%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의결권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7. 재산관련 세제

종교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감독 및 지도를 받고있다. 재산관련 세제 중 납세부담이 많은 종합토지세의 경우 1990년 이전에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던 것을 토지만을 분리하여,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소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로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비과세 되는 토지로는 종교 및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유지, 사찰림, 동유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가 있으며,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로는 공단·공업지역 안의 공장용지, 자경농지, 특수개발림, 영림계획인가림, 중중림, 기준이내의 목장용지, 보존임지·문화재보호구역·자연환경지구·도시공원 내의 임야 등 이 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내지 기타 개발제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여도 행정상 건축행위를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토지에 대하여, 현 법규상 납부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종합토지세를 납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가 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등 세 부담이 각 종교법인마다 큰 부담으로 안고 있다. <표 4-17>에서 보듯이 설문지에 응답한 전체 법인 중 67.3%가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19.2%는 일부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해주었다.

이와 같이 종교법인들은 감면 내지 일부 감면을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업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여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행정절차나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면,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 하는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과세체제로 종교법인 및 기타 공익법인의 무거운 세 부담을 덜어주어 고유 목적사업에 더욱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8. 종교재산기본법(안)⁷²⁾

우리나라는 1962. 1. 10. 향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87. 11. 28.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었다. 1993. 9. 1.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이 여러 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는 다른 공익법인과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었다. 현행 법률이 불교, 유교 등 특정종교에 한해서만 특별법의 형식으로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교관계법 등의 통일적인 법체계가 없으며 세금이 과세되고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등, 종교재산이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종교재산기본법안은 한국종교재산관리법제정추진위원회에서 종교재산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 ‘종교재산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법 초안 마련에 들어가 15개조의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2000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정부가 특별부가세 면세조치를 3년 연장하고, 여야대립으로 국

72) 부록, 「설문지」, 참조.

회 회기가 단축되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국회제출을 보류한 상황이다. 종교재산기본법은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에서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종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부 비과세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 종교재산에 대한 ‘원칙적인 비과세’를 제시하고 있다. <표 4-21> 한국종교재산기본법안의 인지도, <표 4-22> 한국종교재산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6%가 한국종교재산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정부관계자는 ‘종교계만 혜택을 준다면 다른 법인과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종교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국회통과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2001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부가세 면세 조치가 폐지될 상황에 처해져 있어 종교법인의 활동이 위축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교법인들은 종교재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9. 재무보고기준 및 외부감사제도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재무보고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과 기능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법규에 맞추어 작성되는 보고서로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구나 기업회계가 비교적 체계적인 회계이론의 뒷받침 하에 제공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이를 기준으로 세법 등 관계법령이 제정된 데 비하여 비영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상 필요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세법의 규제를 받아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조직회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회계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비영리조직의 양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역할의 증대로 인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비영리조직회계에 대한 이론과 회계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종교법인도 종교법인 형태에 적용되는 재무보고기준을 정립하여 제정하고 기업회계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재무보고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여 투명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법인과 관련된 법인세 및 기타 세제의 적절한 과세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회계처리규정과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회계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종교법인의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 수준을 일반 영리법인의 처리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종교법인의 운영에 대한 외부의 검증제도가 없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이상인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회계감사제도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세무확인검사는 재산이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관한 회계감사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표 4-23> 세무확인검사, <표 4-24> 재무보고 기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종교법인 실무자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필요 없다는 답변을 30% 내외로 하여 재무보고기준 제정, 세무확인검사대상 확대, 외부감사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였다. 하지만, 종교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있는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법인은 독립적인 입장에 있는 외부 감사자로 하여금 세무확인 검사 및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종교법인의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제 5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의 절대 신념체계 또는 궁극적 가치의 역할을 수행하며 종교법인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신자들의 교화, 선교 및 기타 사회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일반 신자의 헌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달한다. 또한 자원제공자에 대한 수탁자의 입장에서 종교 활동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종교법인은 운영목적과 자원조달 방법상의 특징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가지며 점차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종교법인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역할 또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실정이다.

종교법인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여러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종교법인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서는 종교법인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종교법인 조세제도에 대한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함과 동시에 조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각 종교법인 회계 및 세무 실무자들에게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법의 간이성 들어 세법에 많이 사용되는 법률용어,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조세체계상 중요 시 되는 용어는 일률적으로 정의·명시하며 세법의 복잡한 내용과 매년 개정되는 개정법안으로 인하여 실무자들의 적용도와 이해도에 혼란을 주는 비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들을 개정·간편화하여 관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순응비용을 줄이는 방안이기도 할 것이다.

둘째, 현행세법에 의하면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이자소득 전액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 배당소득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산출연의 형태 중 주식으로 인한 출연이 선호되는 점을 감안하여 배당소득도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포함시키도록 해야한다. 공익활동이 더욱 요구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종교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의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부금의 세제지원 중 전액손금 인정되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이 기부금의 일정부분만 손금 인정되는 종교법인 및 기타 공익법인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공익사업에 기부금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늘리고 정부주도의 공익사업을 위한 법정기부금 대상과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을 위한, 지정기부금 대상간의 세제상의 혜택 차이가 기부금의 공익성 정도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지 않다. 결국, 공익사업활동의 편중을 초래하므로 지정기부금 대상과 법정기부금 대상간의 세제상 혜택의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법인 소유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2000년 12월 29일에 개정하여 시행 중 1년 만에 특별부가세 면제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을 폐지한다는 안을 2001년 세법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종교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비영리법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확보와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폐지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국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간접적인 지원이 세제감면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조항 폐지안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종교법인 및 기타 공익법인에 대한 5%주식 보유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신규 법인의 설립이 저해되고 있다. 기존의 5%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철회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공익법인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여섯째, 종교법인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내지, 기타 개발제한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기타세제를 최소한 분리과세 내지 비과세 하여 종교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나라 종교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보호에 대하여 일본의 종교법인법과 같은 법안을 1988년에 검토된 바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종교법인의 시설이나 재산 등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로 종교재산기본법(안)이 마련되었으며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 종교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1999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2년에 한번 외부전문가의 확인 검사를 받는 종교법인의 범위가 자산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종교법인 및 기타 공익법인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경우 오랜 역사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종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무보고서 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다. 현재 종교법인에 대한 재정분야는 그 규모나 역할이 방대해 지고 있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하여 종교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은 종교의 탄압이 아니라 법인의 바른 재정과 경리, 재산관리를 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종교법인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종교법인별로 자체의 재정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관리와 운영을 능률화·공개화·공정화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보고작성 기준을 제정 후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종교법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종교법인의 조세제도가 현실적으로 또한 조세의 본질 면에서 타당한지를 고찰하고 조세 입법적인 면에서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세의 최종목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세는 재정수요의 충족과 함께 경제 정책적,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 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법인과 관련된 문헌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실증적 분석보다는 제도적 검토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점과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여, 설문조사를 종교법인 대상으로 하였으나, 종교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신율이 저조하고 표본수가 부족한 것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이론적 관점에서 구성되었기에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법인과 관련된 통계가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으로 종교법인과 관련된 자료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법인의 투명성 있는 운영과 종교법인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통계 및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간행물 및 단행본

- ° 고성삼. 회계의 투명성과 회계인의 책임, 「회계와 세무」, 1999. 12.
- ° 김대영외 1. 지방세예규통첩집, 대한세무협회, 2000.
- ° 박충환.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무사, 1997.
- ° 신신웅. 1990년대 비영리회계 교육을 위한 관심, 「사회과학논총」, 6권 1호, 1998.
- ° 손원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 ° 손원익. 비영리법인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동서연구」, 8권 1호, 1996.
- °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 이상조외 2. 국세 예규통첩집, 대한세무협회, 2000.
- ° 이우택.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복잡성과 간소화 과세, 「회계와 세무」, 1999. 9.
- ° 원윤희. 민선자치시대의 세수확보 정상화방안, 「지방세」, 통권 60호, 2001. 1.
- ° 전동훈. 지방세 비과세·감면해설, 「회계와 세무」, 2001. 5.
- ° 전재원. 2001년도부터 달라지는 국세해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호 통권 64호, 2001. 4.
- ° 정대진. 종교법인의 재산관리 및 세법, 정조세연구원, 2001.
- ° 최삼철. 비영리법인과 과세제도,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 ° 대한세무협회. 「세무신보」, 1998 ~ 2001. 11.
- ° 대한세무협회. 법인세실무요해, 2001.
- ° 대한세무협회. 국세예규통첩집, 2000.

- ° 대한세무협회. 지방세예규통첩집, 2000.
- °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0.
- °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0.

2. 논문

- ° 김대영. “과세쟁점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 과세의 개선방향.”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 김문돌.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김윤경.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 김철기.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 노재성. “비영리법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서점순.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 전동훈. “비영리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정진일. “회계 및 과세제도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중소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정태성.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최동진.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경영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7.

- ° 한대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허유순.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 국외문헌

- ° AAA. “Report of Committe on Accounting Practice for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e Accounting Review, 1978.
- ° FASB.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4. Stamford, Conn. : FASB, 1980.

(부록 1)

설 문 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오 정 우

세무 및 회계 담당자님께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중인 오정우라는 대학원생입니다.

이번에 대학원 졸업논문 준비를 하면서 귀하의 도움을 청하고저 합니다.

연구테마는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종교법인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설문을 드리오니 바쁘신 중에서도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설문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절대 비밀이 지켜지오니, 평소에 느낀 점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해당항목에 V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교법인의 일반현황에 관한 설문

1. 귀 법인은?

-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3) 기타()

2. 귀 법인의 신도 수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 (1) 1,000명 미만 (2) 1,000~2,000명 미만 (3) 2,000명~3,000명 미만
(4) 3,000명~4,000명 미만 (5) 4,000명 이상

3. 귀하는 종교법인에 관련하여 조세 및 회계실무 교육을, 공인된 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1) 1회 (2) 2회 (3) 3회 이상 (4) 없다.

4. 귀 법인의 주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현금(시주) (2)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3) 수익사업 (4) 기타 ()

5. 귀 법인의 연간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1) 5억 미만 (2) 5~10억 미만 (3) 10-15억 미만 (4) 15-20억 미만 (5) 20억 이상

나.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설문

1. 귀 법인의 수익사업이 있다면 수익사업 중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 (1) 도·소매수입 (2) 임대수입 (3) 이자수입 (4) 주식·채권 (5) 기타 ()

2. 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연간 수익은, 총수입의 얼마만큼입니까?

- (1) 20%이하 (2) 20~40%이하 (3) 40~60%이하
(4) 60~80%이하 (5) 80%이상

3. 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연 이익 중 얼마만큼 목적사업에 사용합니까?

- (1) 20%이하 (2) 20~40%이하 (3) 40~60%이하
(4) 60~80%이하 (5) 80%이상

다.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설문

(가) 조세일반 항목

1. 귀하는 종교법인 업무와 관련 조세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 (1) 아주 잘 이해한다 (2) 이해한다 (3) 보통이다
(4) 잘 이해하지 못한다 (5) 전혀 이해하지 못 한다

2. 귀하는 종교법인 업무와 관련, 현행 조세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복잡하다 (2) 복잡하다 (3) 보통이다 (4) 간단하다 (5) 아주 간단하다

(나) 법인세법 항목

1. 귀하는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과세형평성'을 들어 과세한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비과세 해야한다 (2) 현행대로 과세해야한다 (3) 경감세율을 적용해야한다
(4) 기타()

2. 귀하는 종교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비과세 해야한다 (2) 현행대로 과세해야한다 (3) 경감세율을 적용해야한다
 (4) 기타()
3. 귀하는 기부금의 세제지원 중 법정기부금 및 사립학교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전액 인정해주는 반면, 종교법인에 관한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일부만 인정해주는 현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부 손금 인정해야 한다 (2) 현행대로 일부만 인정해야 한다
 (3) 전혀 인정받을 필요 없다 (4) 기타()
4. 고유목적사업 활성화에 한층 더 이바지하려면 이자소득에 한해서만 준비금 설정이 허용되는 것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2) 배당소득만 설정하도록 한다
 (3) 모두 설정되도록 한다 (4) 모두 설정될 필요 없다
5. 귀하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2항에 대한 적용이 2003.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영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3) 적용할 필요 없다 (4) 기타()

(다) 상속·증여세 및 지방세법 항목

1. 종교법인에 대한 동일항목 주식 5% 이상의 보유금지 조항은, 주식을 현금화해서 출연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선의의 기업가가 공익법인에 더 많은 주식을 출연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2) 현행대로 유지하되 5%초과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해야한다 (4) 기타()
2. 귀하는 종교법인이 목적사업대로 사용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기타세제를 부과시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대로 과세해야 한다 (2) 감면해야 한다 (3) 일부 감면해야 한다 (4) 기타 ()

3. 귀하는 지방세법상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시, 비과세 유예기간을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자들의 판단에서 등록세의 유예기간을 다시 정한다면 몇 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1년 (2) 3년 (3) 5년 (4) 7년 (5) 9년 이상

라. 기타

1. 귀하가 국세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 세무공무원들의 처리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 (1) 잘 처리하여 준다 (2) 보통이다 (3) 어렵게 처리하여 준다. (4) 안 해준다

2. 귀하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2001.3.31.)에 의하여, 종교법인의 지도·감독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관할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위임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비교하여 지도·감독이 어떻습니까?

- (1) 엄격하다 (2) 보통이다 (3) 무관심하다 (4) 기타 ()

3. 귀하는 한국종교재산기본법안이 제정·추진 중인걸 알고 있습니까?

- (1) 잘 모른다 (2) 약간 알고 있다 (3) 아주 잘 안다 (4) 기타 ()

4. 귀하는 한국종교재산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불필요하다 (2) 보통이다 (3) 필요하다 (4) 기타 ()

5. 귀하는 세법상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 대상이 자산30억 이상인데, 향후 세무확인검사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축소해야한다 (2)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3) 확대해야 한다 (4) 기타 ()

6. 귀하는 종교법인의 재무보고기준의 제정과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필요하다 (2)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3) 필요 없다 (4) 기타 ()

7. 상기 설문 외 종교법인의 조세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

- 이제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록 2)

한국종교재산기본법(안)

제 1조 (목적) 이 법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교의 제약 없는 종교예식·선교, 교육, 사회 봉사활동 등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종교의 부흥발전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교재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2. ‘종교의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는 종교관, 포교원,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토지·임야·주차장부지 등
 - 나. 종교 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하였거나 신축 또는 개축 중에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성직자 등의 주거용 택지·주택 및 주차장 부지
3. ‘종교의 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종교의식’에 따르거나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위하여 헌납된 각종 명목의 현금
 - 나. 종교의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그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자금
 - 다. 국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종교단체에 출연한 각종 기부금
 - 라. 종교단체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성된 자금

4. ‘기타재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존 관리하는 부동산, 동산을 제외한 기타 유·무형의 재산 일절을 말한다.
5. ‘종교단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각 종교단체
 - 나.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 각 교단의 법인 및 부속 개체단체
 - 다. 종교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각 항목에 소속한 법인격 없는 재단, 사단 또는 단체
6. ‘종교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종교의 선교, 종교교육, 사회봉사활동, 구제사업 등 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하여 행하는 일절의 활동을 말한다.
7. ‘성직자 등’이라 함은(해당 종단에서 채택한 고유명사) 해당 종단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획득한 자.

제 3조 (종교 재산의 보호) 종교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제 4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 2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에 적용한다.

제 5조 (재산목록 작성과 보고) ① 종교재산관리자는 그 설립할 때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일정규모이하의 단체는 소속 종교단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의 범위, 절차, 재산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교재산의 보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조 (관할관청) 이 법에 의한 종교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관할 관청은 문화관광부로 한다.

제 8조 (재산관리)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종교재산은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당해 종단, 법인, 개체교회 또는 기타 종교 단체 등이 이를 보존 관리한다.

제 9조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종교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부 비과세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제 10조 (종교위원회) ①각 종단의 교리적 문제나 종교적 특성의 문제는 종교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한다.

②종교위원회의 구성, 권한 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조 (기타 사항) 1.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조 (종교재산처분금지) 종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도, 교환, 기타 제공처분 할 수 없다.

제 13조 (종교재산관리자 선임) 종교단체는 종교재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의 규약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한 자가 재산관리자가 된다.

부 칙

제 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종교 재단 및 종교 소속 관련 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청(문화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재산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